

(2002가단5050호, 8097호 병합) - 충주지원 민사 2단독(제1심)

항 소 장

항 소 인(피고) 오 ○○외 2

피항소인(원고) ○○광업 주식회사

공작물 철거 등 청구의 항소

소 가 : 217,800원

인지대 : 1,600원

송달료 : 108,000원

청주지방법원 항소부

귀 중

항 소 장

- 항 소 인(피고) 1. 오 ○○
2. 윤 ○○
3. 박 ○○

피항소인(원고) ○○광업 주식회사

충북 음성군 금왕읍

대표이사 김○○

공작물철폐등 청구의 항소

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2가단5050호 공작물 철폐, 2002가단 8097호(병합) 공작물 철폐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(피고)들은 동원에서 2002. 12. 12. 선고한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

(원판결의 표시)

1.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18 답 3762㎡ 중 별지도면표시 24, 25, 26, 27,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1.5㎡를 철폐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원고의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오○○, 윤○○, 박○○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(항소인들은 이 판결정본을 2002. 12. 27.에 송달받았습니다.)

항 소 취 지

1.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 2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 3. 소송비용은 1,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1. 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항소장 부분
1. 답부서 각 1통

2003. 1. 9.

위 항소인(피고)

오 ○○

윤 ○○

박 ○○

청주지방법원 항소부

귀 중